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탄천물재생센터 3차(총인)처리시설 설치사업[장기계속]]

- 점검일시 : 2019.04.23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이태행

○ 건설기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토사 양중작업시 발생하는 기중기의 회전에 의한 충돌 및 협착 사고 위험이 있으니, 접근방지시설 등을 설치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(접촉방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기중기 양중시 과적으로 인하여 낙하물이 하부로 낙하될 위험이 있으니 과적을 하지 않도록 작업관리를 요하고, 회전반경 하부에 있는 고압가스용기를 이동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(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안전난간 측면에 설치된 토류판으로 인해 토압을 받아 난간하부가 꺾이고 기울어져 있는 상태임. 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관리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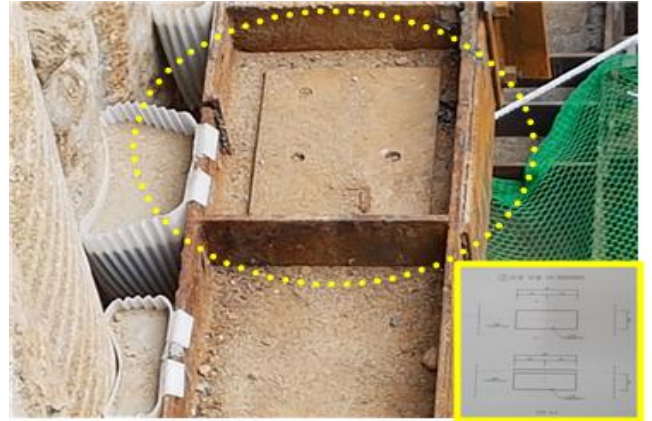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지하층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전함은 근로자의 접근이 불편하고 위험해 사용시 전도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위치로 이동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1처리장 띠장 이음부 연결시 Web에 플레이트에 의한 용접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이 있으므로 보강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지중경사계의 관리기준치의 위험 허용치는 현재 0.35%H로 되어 있으나, 시공 중 지반계측기준(KCS11 1015)에 의거하여 0.3%H를 위험기준치로 조정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(계측장치의 설치 등)

5. 안전 계측관리 기준

계측항목	관리 기준치			비고
	안정	경계	위험	
지중경사계 (Groundwater)	0.25% H	0.25% H ~ 0.35% H	0.35% H	Sheet Pile (연속벽)도
지중수위계 (Water level monitor)	0.25m/day	0.5 ~ 1.0m/day	1.0m/day 이상	
연장변위 (Strain change)	일률치 $0.1.2$	0.1.2 ~ 일률치 $0.3.0$	0.3.0 ~ 일률치 $1.0.0$	1 = 방재(방수)용벽
기중변위 (Crack width)	일률치 $0.1.2$	0.1.2 ~ 일률치 $0.3.0$	0.3.0 ~ 일률치 $1.0.0$	1 = 방재(방수)용벽
연장변위계				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1처리장 CIP벽체의 누수구간이 다수 발생되고 있고, 재료분리 구간이 존재하므로 유입수에 의한 자갈 등의 탈락 위험이 있으니 보강 후 굴착작업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 방지)

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서 사용하는 운반구는 최대 적재하중 등 운반구의 제원을 표기하여 사용 요망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13 (자재운반구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은 지면과 틈새가 있어 하부로 돌, 자재 등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, 낙하 위험이 없도록 조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보완요망①굴착구간 이동통로 설치②타설작업자의 이동통로 설치③현장 출입구 주변 자재와 이동통로 구분요망④철근 배근 작업시 발빠짐방지시설을 설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